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황우진
전화 031-5182-4290 / 팩스 031-5182-4555

보도자료
2024. 8. 28.(수)

유명 유튜버에 대한 공갈·정보누설 등 혐의 변호사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 甲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甲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변호사 A를 오늘(8. 28.)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주요 요지는,
 - 甲에 관한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8. 14. 공갈 등으로 구속 기소된 B와 공모),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하여 甲의 소속사 대표 乙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甲 소속사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하고,
 - B에게 甲의 과거 정보를 제공하여 **B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甲을 위협하여 '언론대응, 홍보' 등 관련 자문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하고,
 - PR계약 관련 **업무상비밀인 甲의 과거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입니다.
- 수사한 결과, **피고인은**
 -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분쟁을 원만하게 종식시키고 그 이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의 분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 민사소송 진행 중 소송 상대방인 乙과 법률자문계약 체결, 변호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甲·乙의 개인정보 누설, 乙의 유서 조작 등 **변호사로서 각종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 사이버랙카들의 활동 방식과 약탈적 범죄성향을 이용하여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사이버랙카를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개시 후 甲에 관한 민감정보를 대중에 유포하였는바,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규명, 구속 기소함으로써 **2차 피해 추가 확대를 차단**하였고, 향후에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원지검은 대검의 7. 15. ‘「사이버랙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지난 8. 14. 유튜버 4명(3명 구속, 1명 불구속)을 공갈 등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변호사 A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직접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사이버랙카 관련 범죄를 엄단하였음

1 피고인

- A [39세, 변호사, 前 기자, 탈취제 판매업, 구속]

2 주요 공소사실 요지

일시	공소사실 요지	죄 명
'21. 10.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 甲의 소속사 대표인 피해자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 알게 된 甲·乙의 동거 관련 정보를 사이버랙카 유튜버 B에게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B와 공모하여, 甲·乙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 乙을 위협	협박
	위 협박과 함께, 기자로서 乙측이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乙과 법률자문계약 체결 후 乙에게 위 소송 취하 강제	강요
	변호사로서 민사소송 상대방인 乙과 법률자문계약 체결 후 위 소송 취하 관련 자문료 150만원 취득	변호사법 위반
'23. 2.	B에게 피해자 甲의 탈세 및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여 B의 5,500만원 갈취 범행 방조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공갈방조
'23. 5.	피해자 甲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 체결 후 자문료 2,310만 원 갈취	공갈
'24. 7.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피해자 甲의 탈세 등 정보를 유튜버 C 측에 제공	업무상 비밀누설

3

주요 수사 경과

- '24. 7. 19. 고소장 접수
- '24. 7. 25.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 '24. 8. 2. 구속영장 기각
- '24. 8. 14. 구속영장 재청구
- '24. 8. 19. 구속영장 발부

4

수사 결과 및 의의

①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한 분쟁 유발 · 갈등 조장

-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분쟁을 원만하게 종식시켜 그 이익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의 분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였음
- 소송상대방으로 처음 만난 乙을 협박, 乙의 자문변호사 지위 취득
 - '21.10.경 乙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으로서 乙을 처음 알게 된 후,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유튜버 B에게 甲·乙의 혼전 동거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B의 뒤에 숨어 乙을 협박하였음
 - 이에 더하여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위 소송 관련 乙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하고 소송상대방인 乙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료를 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였음
- 甲·乙 사이의 분쟁 종식 후, 분쟁 재발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 피고인은 자문변호사로서 乙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甲·乙 사이의 민·형사사건을 乙로부터 수임하였으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甲이 乙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서 분쟁이 종식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이에 피고인은 甲·乙 사이의 분쟁을 재발시키기 위하여 '23.2.경 B에게 재차 甲의 탈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

- B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甲을 협박하여 5,500만원을 갈취하였고, 甲은 乙이 B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여 乙을 다시 고소하였음

이에 乙은 형사처벌을 걱정하다가 '23. 4.경 모친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음

● 乙이 사망하자, 甲을 상대로 직접 협박하여 금품 갈취

- 피고인은 乙의 사망으로 소송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일말의 반성도 없이 乙이 사망하고 불과 3일 후 甲을 상대로 직접 협박하면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무상으로 광고해달라고 요구하였음
- 피고인은 甲이 채널 특성을 이유로 광고에 난색을 표하자, 법률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甲과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갈취하였음

② 변호사 직업윤리의 심각한 훼손

- 피고인의 소송상대방인 乙과의 법률자문계약 체결, B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乙의 유서 조작, 甲에 관한 업무상비밀누설 등은 변호사의 각종 직업윤리(「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들임
- ① 소송상대방인 乙에게 변호사가 있음에도 乙과 직접 교섭, 협박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이익을 수령함
- ② B에게 甲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법률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박성 문구와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었음
- ③ 甲으로부터 자문료를 갈취하던 중 B에게 甲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마치 乙의 지시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책임을 모면하고자 乙의 유서를 조작하여 유폐하였음
- ④ 검찰 수사 개시 후 자신에 대한 비난여론을 甲에게 돌리고자,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甲의 사생활에 관한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유튜버 C 측에 제공하여 변호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뢰인의 비밀과 권익을 자발적으로 침해하였음

3 사이버렉카에 대한 지능적 배후 조종

-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은 타인의 약점을 자극적으로 폭로·왜곡한 콘텐츠를 동영상 플랫폼에 유포하여 광고수익을 얻거나, 약점 폭로 중단을 빌미로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에 나서기도 하였음
- 이러한 사이버렉카들의 악탈적 범죄성향을 잘 아는 피고인은 사이버렉카 B에게 甲·乙의 동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그에 관한 영상이 유포되게 하거나 甲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다시 제공하여 B의 갈취 범행을 방조하고, 甲·乙 사이에 이미 종식된 분쟁을 재발시켰음
- 이처럼 피고인은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사이버렉카를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임

4 추가적 2차 피해 차단

-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乙의 지시로 B에게 甲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는 내용으로 乙의 유서를 조작한 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하여 甲과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였음
- 또한 피고인은 甲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인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하여 여성인 甲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가하였음
- 검찰은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수사와 병행하여 피고인의 범죄혐의까지 신속히 규명, 구속 기소함으로써 추가적인 2차 피해 확대를 차단하였음

5 향후 계획

- 수원지검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